

1.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5. 5. 27)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서, 고시에 위임되어 있던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행위제한 및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및 절차규정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기존 고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 하도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 및 별표의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개인투자조합의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22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의3(개인투자조합의 등록취소 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17조의2(창업기획자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의3(창업기획자의 등록취소 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투자자의무이행 유예기간 이후에도 영 제15조제1항에 의한 투자자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치유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이 중대하거나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에 의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의2(등록취소)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벤처투자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란 벤처투자회사의 파산·부도 또는 이와 동등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회사 운영 또는 조합 관리가 어렵게 된 때를 말한다.

제23조의3(벤처투자회사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①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제23조의4(벤처투자회사의 등록취소 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투자자의무이행 유예기간 이후에도 영 제24조제1항에 의한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벤처투자회사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 처분에 앞서 3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이 중대하거나 투자자 및 벤처투자회사와 거래하는 자의 권익보

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제4항에 의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① 법 제62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6과 같다.

제27조의3(벤처투자조합의 등록취소 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통지받은 투자자의무이행 유예기간 이후에도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법 제6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 처분에 앞서 3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이 중대하거나 투자자 및 벤처투자조합과 거래하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제4항에 의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인투자조합 행정처분 세부기준(제10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적발 당시를 기준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 직무정지이거나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차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를 적발한 당시 이미 위반행위가 해소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처분을 아니할 수 있다.

마.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 직무정지 또는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조합원 또는 투자기업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개인투자조합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2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 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3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4.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 가입을 권유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4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5.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5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6.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6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경고 또는 시정명령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라.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등록취소
마.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등록취소
바.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등록취소
사.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등록취소
아.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등록취소
자.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등록취소

차.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등록취소
카.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록취소
타. 영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록취소
파. 영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록취소
하. 영 제8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록취소
7.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운용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7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록취소

8.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8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등록취소
9.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9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등록취소
10.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0호	시정명령	등록취소	
1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1호	경고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나. 업무집행조합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3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3.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 가입을 권유한 경우	법 제22조제2 항 및 같은 조 제1항제4 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4.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2 항 및 같은 조 제1항제5 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5.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 행한 경우	법 제22조제2 항 및 같은 조 제1항제6 호			
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나.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다.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라.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마.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 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업무정지 명령

지 아니한 경우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바.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사.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아.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자.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차.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카.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타. 영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파. 영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하. 영 제8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6.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운용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7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7.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8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9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11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다. 업무집행조합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을 말한다)의 임직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3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3.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4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4.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5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5.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6호			
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나.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다.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라.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마.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 수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직무정지 3개월	면직 또는 해임 직무정지 6개월,
바.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 무를 위탁한 경우	경고	직무정지 3개월	면직 또는 해임 직무정지 6개월,
사.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직무정지 3개월	면직 또는 해임 직무정지 6개월,
아.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직무정지 3개월	면직 또는 해임 직무정지 6개월,
자.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직무정지 3개월	면직 또는 해임 직무정지 6개월,
차.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직무정지 3개월	면직 또는 해임 직무정지 6개월,
카.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	직무정지 3개월	면직 또는 해임 직무정지 6개월,
타. 영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	직무정지 3개월	면직 또는 해임 직무정지 6개월,
파. 영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직무정지 3개월	면직 또는 해임 직무정지 6개월,

하. 영 제8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	직무정지 3개월	면직 또는 해임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6.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운용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조 제1항제7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면직 또는 해임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7.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조 제1항제8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면직 또는 해임 직무정지 6개월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조 제1항제9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면직 또는 해임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조 제1항제11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면직 또는 해임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별표 2]

창업기획자 행정처분 세부기준(제17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적발 당시를 기준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 직무정지이거나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차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위반행위를 적발한 당시 이미 위반행위가 해소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처분을 아니할 수 있다.
- 마.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 직무정지 또는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경미한 사항이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2. 창업기획자의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2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	
다. 법 제25조에 따른 방법을 위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된 지원대상자를 전문보육하지 않는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3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라.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4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마.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및 법 제27조제1항제1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및 법 제27조제1항제2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3)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등록취소

	및 영 제16조제1호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4) 영 제16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및 영 제16조제2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5) 영 제16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및 영 제16조제3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6) 영 제16조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및 영 제16조제4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7) 영 제16조제5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및 영 제16조제5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8) 영 제16조제6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및 영 제16조제6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9) 영 제16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및 영 제16조제7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10) 영 제16조제8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및 영 제16조제8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11) 영 제16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및 영 제16조제9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12) 영 제16조제10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및 영 제16조제10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13)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8호 및 법 제27조제2항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바.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법 제36조 제1항제6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등록취소

를 한 경우			또는 지원중단	
사.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14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7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아. 창업기획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직원 에 대한 요구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8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자.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9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차. 법 제32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 우	법 제36조 제1항제10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카.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 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1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3. 창업기획자 임직원의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나. 법 제25조에 따른 방법을 위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된 지원대상자를 전문보육하지 않는 경우	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3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라.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4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마.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5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바.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6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사.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14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7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아. 창업기획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직원에게 대한 요구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8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자.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법 제36조	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9호		3개월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차. 법 제32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 우	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10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카.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 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11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별표 3]

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3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적발 당시를 기준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 직무정지이거나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차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 라. 위반행위를 적발한 당시 이미 위반행위가 해소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처분을 아니할 수 있다.
-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 직무정지 또는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조합원 또는 투자기업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벤처투자회사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벤처투자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시정명	등록취소

3.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3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령 또는 지원중단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시정명 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4.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4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시정명 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5.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5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시정명 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6.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6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시정명 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나.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시정명 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다.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시정명 령 또는	등록취소

라. 영 제25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지원중단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마. 영 제25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바. 영 제25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사. 영 제25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아. 영 제25조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자. 영 제25조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차. 영 제25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	등록취소

카. 영 제25조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령 또는 지원중단 업 무 정 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타. 영 제25조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파. 영 제25조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7.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등이 자신의 이익을 얻은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7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8.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가.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나.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

다.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지원중단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시정명 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라. 법 제5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시정명 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마. 영 제36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시정명 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바. 영 제36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시정명 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사. 영 제36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시정명 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아. 영 제36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시정명 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자. 영 제36조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시정명	등록취소

차. 영 제36조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령 또는 지원중단 업 무 정 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카. 영 제36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타. 영 제36조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9. 법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9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1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0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11.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1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12.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2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13. 법 제45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3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업 무 정 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14.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4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나.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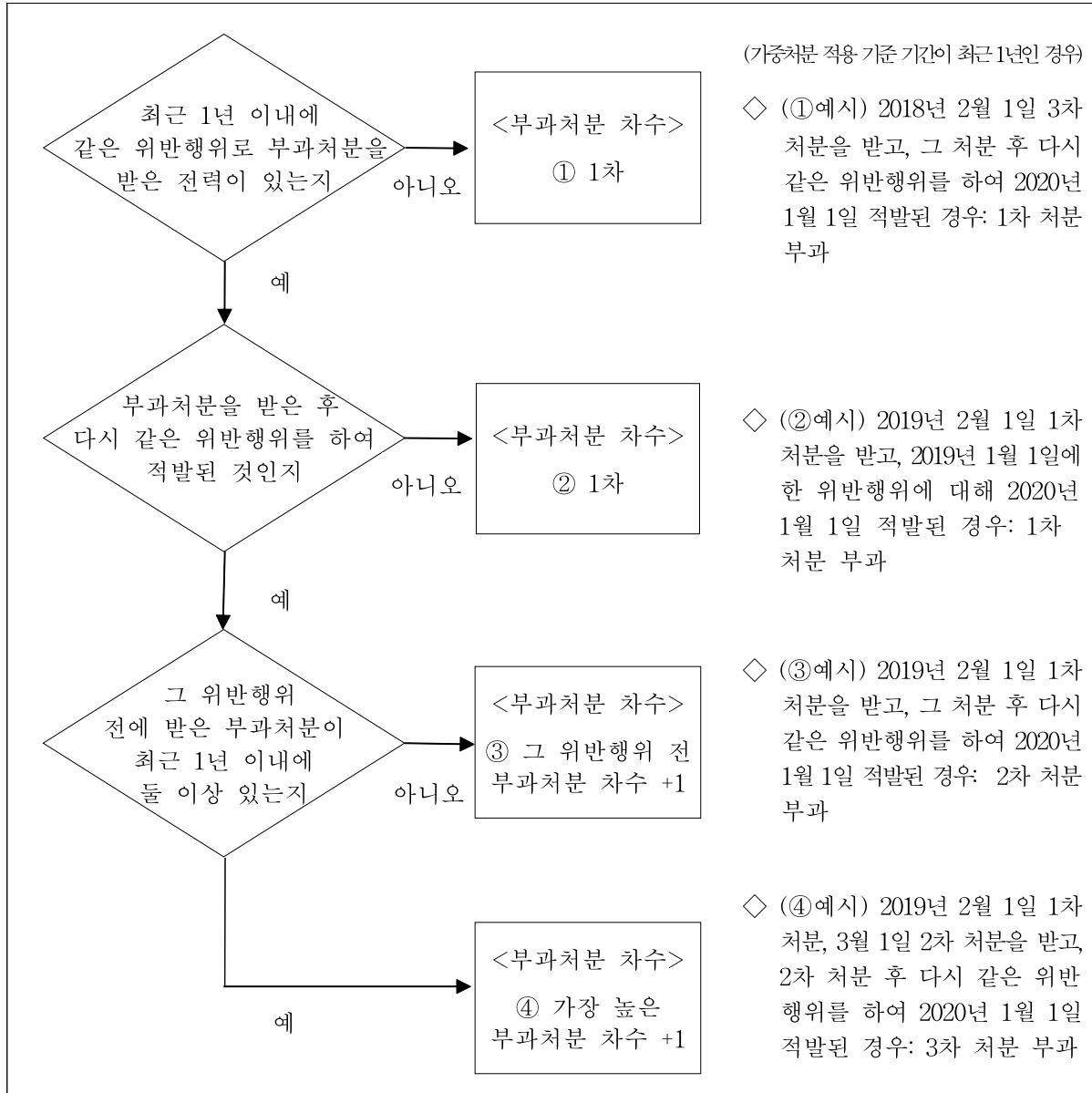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벤처투자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	경고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3호	경고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3.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4호	경고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4.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5호	경고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경우	조 제1항제5호			
5.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조 제1항제6호	경고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6.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등이 자신의 이익을 얻은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조 제1항제7호	경고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7.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조 제1항제8호	경고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8. 법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조 제1항제9호	경고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조 제1항제10호	경고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10.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조 제1항제11호	경고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11.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조 제49조제1항제12호	경고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12. 법 제45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법 제49조제	경고	직 무 정 지	직 무 정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2항 및 같은 조 제49조제 1항제13호		3개월	6개월, 면 직 또는 해임
13.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 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9조제 2항 및 같은 조 제49조제 1항제14호	경고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면 직 또는 해임

[별표 4]

벤처투자회사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3조의3제2항 관련)



[별표 5]

벤처투자조합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7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적발 당시를 기준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 직무정지이거나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차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 라. 위반행위를 적발한 당시 이미 위반행위가 해소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처분을 아니할 수 있다.
-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 직무정지 또는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조합원 또는 투자기업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벤처투자조합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50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법 제62조제	경고 또는	업 무 정 지	등록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항제2호	시정명령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3. 법 제51조 또는 제6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4. 법 제51조의2를 위반하여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5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5.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6호			
가.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나.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다.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라. 법 제5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마. 법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 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월, 시정명 령 또는 지원중단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시정명 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바. 법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 무 위탁을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시정명 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사. 영 제36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시정명 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아. 영 제36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시정명 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자. 영 제36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 또는 영 제41조의 3제3항제2호 후단을 위반한 경 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시정명 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차. 영 제36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시정명 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카. 영 제36조제5호에 해당하는 행	경고 또는	업 무 정 지	등록취소

위를 한 경우		시정명령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타. 영 제36조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파. 영 제36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하. 영 제36조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6.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보관·관리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7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7. 법 제54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8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8. 법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9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9.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0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10.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1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1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2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나.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50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2. 법 제51조 또는 제6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3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3. 법 제51조의2를 위반하여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5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4.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6호			
가.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나.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다.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라. 법 제5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3개 월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또는 시정명령
마. 법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 업무용부동산 처분 의무를 준수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3개 월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또는 시정명령
바. 법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 무 위탁을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3개 월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또는 시정명령
사. 영 제36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3개 월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또는 시정명령
아. 영 제36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3개 월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또는 시정명령
자. 영 제36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 또는 영 제41조의 3제3항제2호 후단을 위반한 경 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3개 월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또는 시정명령
차. 영 제36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3개 월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또는 시정명령
카. 영 제36조제5호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3개 월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또는 시정명령
타. 영 제36조제6호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3개 월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또는 시정명령

파. 영 제36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하. 영 제36조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보관·관리한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조 제1항제7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6. 법 제54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조 제1항제8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7. 법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조 제1항제9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조 제1항제10호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9.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법 제62조제 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 11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3개 월 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또는 시정명령
1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법 제62조제 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 12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3개 월 또는 시정명령	업 무 정 지 명령 6개 월 또는 시정명령

다.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50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	경고	직 무 정 지 1개월	직 무 정 지 3개월
2. 법 제51조 또는 제6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3호	경고	직 무 정 지 1개월	직 무 정 지 3개월
3. 법 제51조의2를 위반하여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5호	경고	직 무 정 지 1개월	직 무 정 지 3개월
4.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6호			
가.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직 무 정 지 1개월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면 직 또는 해임
나.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면 직 또는 해임
다.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면 직 또는 해임
라. 법 제5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면 직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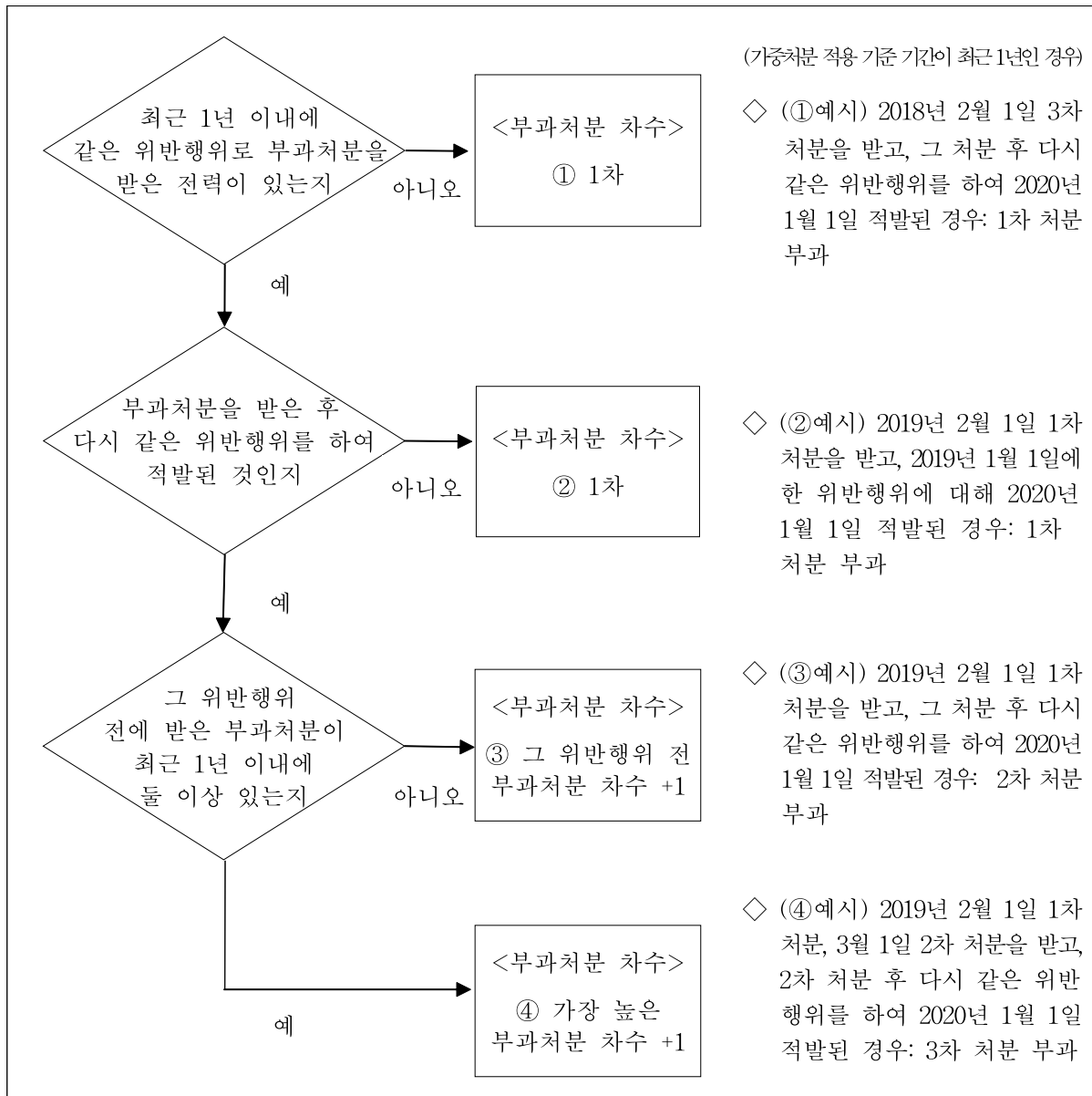
마. 법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 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직 무 정 지 3개월	해임 직 무 정 지 6개월, 면 직 또는 해임
바. 법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 무 위탁을 한 경우	경고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면 직 또는 해임
사. 영 제36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	경고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면 직 또는 해임
아. 영 제36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	경고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면 직 또는 해임
자. 영 제36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영 제41조 의3제3항제2호 후단을 위반한 경우	경고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면 직 또는 해임
차. 영 제36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	경고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면 직 또는 해임
카. 영 제36조제5호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직 무 정 지 1개월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면 직 또는 해임
타. 영 제36조제6호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직 무 정 지 1개월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면 직 또는 해임
파. 영 제36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	경고	직 무 정 지	직 무 정 지

위를 한 경우			3개월	6개월, 면 직 또는 해임
하. 영 제36조제8호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직 무 정 지 3개월 1개월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면 직 또는 해임
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 을 보관·관리한 경우	법 제62조제 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7 호	경고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면 직 또는 해임
6. 법 제54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2조제 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8 호	경고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7. 법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 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 반한 경우	법 제62조제 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9 호	경고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면 직 또는 해임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2조제 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 10호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 거나 기피한 경우		경고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면 직 또는 해임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한 경우		경고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면 직 또는 해임
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 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	법 제62조제 3항 및 같은	경고	직 무 정 지 3개월	직 무 정 지 6개월, 면

집한 경우	조 제1항제 12호		직 또는 해임
-------	---------------	--	------------

[별표 6]

벤처투자조합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7조의2제2항 관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개인투자조합의 행정 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22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u>
<u><신 설></u>	<u>제10조의3(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u> <u>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다.</u> <u>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u>

<신 설>

<신 설>

제17조의2(창업기획자의 행정처
분 세부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17조의3(창업기획자의 등록취
소 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
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
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투자자의무이행 유
예기간 이후에도 영 제15조제1
항에 의한 투자자의무비율을 유지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
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
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정이 필요
한 업무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
의 정지 등 조건을 붙일 수 있

<신 설>

<신 설>

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치유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이 중대하거나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에 의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의2(등록취소)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벤처투자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란 벤처투자회사의 파산·부도 또는 이와 동등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회사 운영 또는 조합 관리가 어렵게 된 때를 말한다.

제23조의3(벤처투자회사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①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신 설>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제23조의4(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취소 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
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
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제2항
에 따라 통지받은 투자의무이행
유예기간 이후에도 영 제24조제
1항에 의한 투자비율을 유지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
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할 수 있
다.

② 벤처투자회사가 법 제49조제
1항제3호 및 제8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시정명령 처분
을 받게 될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시정명령 처분에 앞서 3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

<신 설>

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이 중대하거나 투자자 및 벤처투자회사와 거래하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제4항에 의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① 법 제62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신 설>

별표 6과 같다.

제27조의3(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
지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
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
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통지받
은 투자자의무이행 유예기간 이후
에도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
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
집행조합원이 법 제62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등록취소 사
유가 발생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
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
명령 처분에 앞서 3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

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이 중대하거나 투자자 및 벤처투자조합과 거래하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제4항에 의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